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경감의 경제적 기대효과



## 목 차

### <요 약>

I	검토배경 .....	1
II	부담금의 개념과 기능 및 관련제도 .....	2
	1. 부담금의 개념과 분류 .....	2
	2. 조세 및 준조세와의 관계 .....	3
	3. 부담금 관리제도 .....	4
III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한시적 부담금 유예 현황 .....	6
	1.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	6
	2.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현황 .....	9
IV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	11
	1. 부과목적 .....	11
	2. 부과대상 .....	13
	3. 부과시점 및 방법 .....	14
	4. 투명성 .....	17
V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20
	1. 개선방안 .....	20
	2. 기대효과 .....	24
<부록>	1.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	31
	2.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의 기대효과(산업연관모형) .....	35
<참고문헌>	.....	39

- 이 자료는 본회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308 FAX : 02-6234-5246 E-mail : ochoi@fki.or.kr



## 요 약

### <부담금의 개념과 기능 및 관련제도>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관련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이며 수익자 부담금 등으로 분류됨
  - 부담금은 법률에 의해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이 부여된 자가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
  - 부담금은 공익시설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이용자·원인자 부담금과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 금전에 의한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해 정책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성 부담금으로 분류가능
  - \*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상·하수도법) 등, 수익자 부담금 :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등, 유도성 부담금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등
- 부담금은 부과목적과 대상 등이 조세와 다르며 사회보험 등 다른 준조세와도 차이
  - 부담금은 공익사업 특별관계자에게 사업경비·사업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하나 조세는 특정 사업과의 관련없이 일반국민에게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 관련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나, 피보험자의 연대적 배분과 차등조절을 감안해 부과되는 사회 보험료, 정부 서비스 대가성격의 수수료·사용료 및 의무이행과 처벌을 위한 각종 제재금과도 차이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부담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부담금 관리제도 운용
  - '01년 부담금 설치·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부담금 신·증설 억제와 부담금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도모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신설·변경을 심사하며,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와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부담금의 공정성 등을 지속 점검·평가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및 한시적 부담금 유예 현황>

- 국토교통부 등이 부과하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19개로 93개 전체부담금의 24%수준
  - '15년말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개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19개 부담금이 건설·개발행위와 관련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
  - '10~'15년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부처별 비중은 국토교통부 37.2%, 농림축산식품부 25.1%, 환경부 22.3%, 교육부 7.5%, 산업통상자원부(5.1%) 등의 순
- 시기별로는 사업 인허가 승인 시, 성격별로는 수익자 부담의 비중이 높음
  - 납부시기별로는 '10~'15년 기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52.6%가 사업 인허가 승인 시, 16.1%가 준공 시 납부되며, 31.4%는 그 외의 시기에 납부
  - '10~'15년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성격별 비중은 수익자부담금이 5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38.0%, 유도성 부담금 11.6%의 순
-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일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한시적 감면
  - 규제장관회의('16.5.18일)에서 발표된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규제정비 방안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등 부담금에 대한 한시적 감면방안 포함

-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로 '16.6.15일 확정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으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1.4%p 감소 기대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 □ 조세·부담금과의 중복과 부과목적의 혼재 및 목적과 괴리된 계수의 설정

- 개발 부담금은 양도 소득세, 취득세·재산세·종합 부동산세와 중복성이 있고, 학교용지 부담금 등 기반시설 확보목적 부담금들과 농지보전 부담금 등 보전목적 부담금들은 서로 중복됨
- 부과목적 혼재(과밀 부담금 : 수도권 집중억제·수도권 내 과밀해소)와 부과목적과 괴리된 계수 적용(교통유발 부담금 : 부과목적이 교통량 감축임에도 도심·부도심 등 시설 입지와 무관하게 동일계수 적용)

#### □ 미실현 가공이득에 부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원본잠식 우려

- 개발 부담금 등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특정사업에 대한 특별 재정책임'이라는 부담금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부담금 납부 후 실제 실현가치가 현재가치에 미달하는 원본잠식 발생 우려

#### □ 부담금 납부시기와 산정기준이 불합리하고, 부과율이 과다하며 가산금 부과가 불명확

- 사업초기 부과, 토지매입 관련 부담금 등 제비용 불인정, 요율인상, 감면·면제조항·사후 이의 신청제·분납제 등 부재
  - \* 학교용지 부담금과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을 사업초기에 부과, 업체부담 가중
  - \* 개발 부담금은 토지매입 관련 부담금 등 제비용을 개발이익 산정 시 비용으로 불인정
  - \*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을 학생 수 감소세와 맞지 않게 2배 인상(공동(단독)주택 0.4(0.7)% → 0.8(1.4)%)
  - \* 도시 개발구역 밖의 도시 기반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 부담금은 감면 및 면제조항 부재
  - \*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은 사후 이의 신청제와 분할납부제 부재
- 부담금관리기본법 상한보다 높은 가산금 요율(학교용지 부담금)과 증가산금의 최대 징수기간 부재 및 분할납부 대상 제한(농지보전 부담금)

#### □ 부담금 귀속과 사용용도의 투명성 부족

- 개발 부담금 지자체 귀속분의 일반회계 편성으로 사용처 파악 곤란
-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수산발전 기금에 귀속되어 부과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우려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과제>

#### □ 목적이 같은 조세로의 전환과 부담금간 통합 및 부과목적 명확화 등 추진

- 양도 소득세와 목적이 동일하고 부담금 부과요건 충족이 어려운 개발 부담금과 교육재정 충당목적의 지방 교육세와 중복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
- 기반시설 설치·보전 등 유사목적 부담금들을 통합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목적의 광특회계 배정분은 폐지하며 교통 유발계수를 시설입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부담금 통합 시 1차적으로는 기존 규모와 비중을 따르게 하되, 통합 시스템 안정 후에는 부과수준 인하

#### □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은 폐지

- 미실현 이익에 부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부담금 부과요건 충족이 어려운 개발 부담금 폐지
-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여 개발 부담금과의 중복성이 강하고 임대주택의 의무공급 규제를 통해 개발이익이 환수되고 있으므로 폐지

**□ 부담금 납부시기와 산정기준 개선, 부과율 인하, 감면·면제·이의 신청제 등 정비**

-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어려울 경우, 부과율 인하(단독 1.4% → 0.7%, 공동주택 0.8% → 0.4%)와 납부시기 개선(분양공급 체결 후 60일 → 입주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0일) 추진
- 개발 부담금 개시시점 지가에 토지매입 체비용 포함, 가산금·증가산금의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상응한 조정, 증가산금 최대 징수기간 명시, 농지보전 부담금 분납확대 등 추진

**□ 부담금 귀속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개발 부담금의 사용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 귀속분을 가칭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유도
-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부과목적과 부합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수산발전 기금 내에서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

**<개선시 기대효과>**

**□ 한시적 부담금 유예와 개발 부담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시 일자리 4.5천 명 창출 기대**

- 정부의 한시적 부담금 유예와 함께 개발 부담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시 소비자 후생은 750억 원 증가되며, 미미하지만 실질 GDP 증가 기대(연산 일반균형 모형)

연산 일반균형 모형에 의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의 기대효과

구분		S1	S2	S3
소비자 후생 증가(십억 원)	대등변이(EV : Equivalent Variation)	7.146	69.620	75.127
	보상변이(CV : Compensating Variation)	7.146	69.615	75.122
실질 GDP(증가율, %)		0.00091	0.0088	0.0095

주 : 1. Base 대비 각 시나리오별 지표 증가율  
 2. S1은 시나리오 1(16년 상반기 확정 농지보전 부담금 등 한시적 부담금 유예), S2는 시나리오 2(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3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시나리오 1과 2 포괄

- 정부의 한시적 부담금 유예 및 개발 부담금·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는 부가가치를 2.5천억 원 증가시키며, 4.5천 명의 취업을 창출(산업연관모형)

산업연관 모형에 의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의 기대효과

구분		S1	S2	S3
부가가치(십억 원)		20.8	227.4	248.1
일자리(명)	취업	376.5	4,116.1	4,490.2
	고용	207.1	2,264.3	2,470.0

주 : 1. Base 대비 각 시나리오별 지표 증가율  
 2. S1은 시나리오 1(16년 상반기 확정 농지보전 부담금 등 한시적 부담금 유예), S2는 시나리오 2(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3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시나리오 1과 2 포괄





## I 검토배경

### □ 부담금은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고 중복적 성격의 부담금도 존재

- 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조세와는 달리 사후감시 장치 등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
- 특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목적세와 중복되거나 목적이 유사한 중복적인 부담금들이 존재하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담금도 있는 실정
  - 환경개선 부담금은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을 명목으로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과 목적이 같은 조세성 부담금이라 할 수 있음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 중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의 경우, 과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된 바 있는 토지 초과 이득세와 성격이 유사

### □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국민과 건설사업 최종수요자 부담으로 연결

- 전체 부담금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비중은 '15년 현재 22.7%에 달함

#### 전체 부담금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비중 추이

(단위 : 비중, %)

구분	'12	'13	'14	'15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24.4	23.8	23.1	22.7

자료: 기획재정부(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년도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

- 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결국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국민과 건설사업 최종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됨

###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개선 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것처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함
-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담금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개선 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1. 부담금의 개념과 분류

### □ 부담금은 특정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적 지급의무

-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을 ‘법률에 의해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명칭과는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로 정의
- 부담금은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 사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sup>1)</sup>’이라는 특징을 가짐
  - \* 부담금은 일반적 재정충당과 달리 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기능도 수행하며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징수목적과 특별한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

### □ 부담금은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가능<sup>2)</sup>

-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원인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시설로 인해 특별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
  - \*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의 예 :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상·수도법상), 물이용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 \* 수익자 부담금의 예 : 개발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등 유도성 부담금은 금전에 의한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해 일정한 국가목적에 유도하기 위해 부과
  - \* 유도성 부담금의 예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과밀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등

### □ 수익자에 의한 공공 서비스 창출과 바람직한 행위유도 등의 기능 수행

- 부담금은 공공 서비스 창출을 위한 비용을 해당 공공서비스 원인 제공자 또는 수익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sup>3)</sup>
- 부담금은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의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

1)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 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함

2) 부담금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담금간 경계가 애매할 수 있고 의미상 중첩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음

3) 공공재는 사적인 재화와는 달리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으로 인한 무임 승차자(Free Rider) 문제 등으로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인자·수익자에게 공공재 공급비용을 편익에 비례하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공재 공급수준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음

## 2. 조세 및 준조세와의 관계

### □ 부담금은 부과목적과 부과대상, 부과기준면에서 조세와 구별됨

- 부담금은 공익사업 재원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와 성격이 유사하나 정부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달리,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한다는 점에서 다름
- 부담금은 공익사업 특별관계자에게 사업경비·사업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하나 조세는 사업과의 관련 없이 일반국민에게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

### □ 부담금은 준조세에 포함되나 사회보험, 기부금 등 다른 준조세와는 차이

- 부담금은 특정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나,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적 배분과 차등적 조절을 감안하여 부과
- 부담금은 바람직한 행위유도를 위해 부과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사용료와는 다르며 의무이행 확보나 처벌을 위한 각종 제재금과도 차이가 있음

#### 부담금과 다른 광의의 준조세<sup>4)</sup> 개념과의 차이점

구분	개념	부담금과의 차이
사회보험	질병·실업 등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	피보험자들 사이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하여 부과
수수료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	개별적 공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 부담금은 바람직한 행위 유도를 위해 부과되기도 함
사용료	공공시설·재산 이용의 대가	
과태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로 부과(금전벌)	행정제재금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 * 부담금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유도를 위해 부과
벌금	범죄인에 대한 재산박탈 형벌	
범칙금	범칙행위에 대한 금전벌(납부통고 기간 안에 비납부 시 형사 처벌)	
가산금	행정법상 급부 의무 비이행 시 제재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상 제재	
이행 강제금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금전벌	

자료 : 기획재정부, 201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16.5

4) 기업이 사실상 또는 법령에 의해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총칭

### 3. 부담금 관리제도

####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부담금운용을 전반적으로 통제

-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신설·변경 심사(제6조), 종합보고서 작성과 국회제출(제7조), 운용평가 제도(제8조)와 종합계획서 작성·국회제출(제6조의2) 등을 규정
-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담금의 정비와 부담금 신설 통제 및 부담금 운용내역 공개 등이 필요

#### □ 부담금 관리제도는 무분별한 부담금 신·증설 억제와 투명성 확보가 목적

- 부담금 징수 증가에 따른 방만한 사업운영과 중복부과, 여건변화와 괴리된 부담금 부과 및 부과대상과 방식 불합리 등 부담금의 비효율적 측면 발생
- '01년 부담금 설치·관리와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 부담금 신·증설 억제와 부담금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도모

#### □ 부담금 신설·변경 심사를 통해 부담금 신·증설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억제

- 중앙 행정기관장은 부담금 신설 변경 전 기재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
- 부담금기본법에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심사요청 시 제출하는 계획서에 필요성, 부과요건 등 세부내용을 포함토록 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상 신설·변경 시 심사기준

- ① 부담금 신설·변경의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 ② 부담금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③ 부담금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출 것
- ④ 기본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 ⑤ 부담금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 ⑥ 부담금 존속기한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될 것

- 심의위원회<sup>5)</sup>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이며 부담금 관련 부처장이 지명한 고위 공무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의 10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사는 『소관 행정기관 자체심사 ⇒ 기재부에 타당성 심사요청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상정 ⇒ 보류(재검토 또는 수정요청) 또는 의결(부담금 신설·변경)』의 절차를 따름

5)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는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은 물론,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과 같은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전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 작성과 국회제출 의무화

- '02년부터 전년도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14년부터는 다음 연도 부담금 부과와 사용계획이 포함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종합보고서는 매년 5월말, 종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에 제출
  -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작성은 『기재부장관, 작성지침 수립과 통보(1월말) ⇒ 행정기관장, 부담금운용보고서 기재부장관 제출(3월말) ⇒ 기재부 장관, 종합보고서 작성 국회제출(5월말)』의 절차를 따름
  -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 작성은 『기재부장관, 작성지침 수립과 통보(3월말) ⇒ 행정기관장, 부담금운용 계획서 기재부장관 제출(5월말) ⇒ 기재부 장관, 종합보고서 작성 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의 절차를 따름

## □ 부담금운용 평가단 운용 등을 통해 부담금의 공정성 등을 지속 점검·평가

- 기재부 장관은 부담금 운용실태 점검·평가와 관련한 전문적·기술적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해 부담금운용 평가단을 운용할 수 있음
  - 평가단은 재정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sup>6)</sup> 중에서 기재부장관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03년 부담금운용 평가를 처음 시행한 후 '09년까지는 3년 주기로 전체 부담금을 평가해오다 '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
- 평가결과 적정하지 않은 부담금은 폐지 등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6)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재부장관이 위촉

1.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 '15년말 현재 총 93개 부담금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담금은 19개

- '15년 12월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 개수는 총 93개<sup>7)</sup>이며 이중 19개<sup>8)</sup>의 부담금이 건설·개발행위와 관련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 \* 건설·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기획재정부 자료(2013.6.18., 『'12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른 '13년 부담금제도 개선방안』)에 제시된 건설·개발사업 관련 19개 부담금 중 폐지된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금을 제외하고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한 19개 부담금
- 전체 부담금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비중은 25% 내외이며, 관련 정부부처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7개 부처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징수추이

구분	'10	'11	'12	'13	'14	'15	'10~'15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조 원)	3.9	3.6	3.8	3.9	4.0	4.3	23.6
전체 부담금(조 원)	14.5	14.8	15.7	16.4	17.2	19.1	97.6
전체 부담금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비중(A)(%)	26.8	24.6	24.4	23.8	23.1	22.7	24.1

자료 : 기재부(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연도)

□ 부동산 투기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

- '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개발이익 환수를 부담금 부과 목적으로 명시한 재건축 부담금과 개발 부담금 외에도 개발이익 환수를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용지 부담금 등 수익자 부담금의 대부분은 개발이익 환수가 부담금 부과목적의 하나

7) '1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상의 부담금 총 수는 93 개가 아닌 94 개로 되어 있는데, 이는 '15.7.20일 대기 총량초과 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었으나 '15년도 징수 실적이 있어 '15년도 말 부담금 수에 포함하였기 때문

8) 19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조지 조성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국토계획법상), 과밀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부담금, 도시개발 구역 밖의 도시 기반시설 및 추가 설치 비용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도로법상)

□ 부처별 비중은 국토부(37.2%), 농림부(25.1%), 환경부(22.5%) 등의 순

- 19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관할 정부부처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의 7개 부처임
- 금액기준 부처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비중('10~'15년 합계)은 국토교통부(37.2%), 농림축산식품부(25.1%), 환경부(22.3%), 교육부(7.5%) 등의 순

부처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단위 : 십억 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10~'15 합계
국토교통부	1,429.6	1,442.6	1,482.9	1,547.2	1,434.2	1,434.3	8,770.8
비중	36.9	39.6	38.7	39.6	36.2	33.1	37.2
농림축산식품부	1,043.2	949.2	895.6	937.0	985.5	1,100.2	5,910.8
비중	26.9	26.1	23.4	24.0	24.9	25.4	25.1
환경부	845.2	751.8	893.6	902.5	883.0	968.6	5,244.7
비중	21.8	20.6	23.3	23.1	22.3	22.3	22.3
교육부	227.6	214.8	267.5	248.8	359.3	457.4	1,775.3
비중	5.9	5.9	7.0	6.4	9.1	10.5	7.5
산업통상자원부	211.7	173.8	186.6	178.0	190.4	250.4	1,190.9
비중	5.5	4.8	4.9	4.6	4.8	5.8	5.1
산림청	114.5	102.1	92.3	85.6	101.8	119.0	615.2
비중	3.0	2.8	2.4	2.2	2.6	2.7	2.6
해양수산부	6.5	8.2	12.5	5.3	6.1	5.4	44.0
비중	0.2	0.2	0.3	0.1	0.2	0.1	0.2
총합계	3,878.4	3,642.4	3,831.0	3,904.3	3,960.3	4,335.3	23,551.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기재부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년도 자료를 기초로 작성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52.6%는 사업 인허가 승인 시, 16.1%는 준공 시 납부

- 납부시기별로는 주로 사업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또는 준공을 하였을 때 납부하며, 그 외의 시기<sup>9)</sup>에 납부하기도 함
  - 사업 인허가 승인 시 납부하는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등이며, 준공 시 납부하는 부담금은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임
  - 사업 인허가 시 또는 준공 시외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임
- '10~'15년 합계 기준으로 볼 때, 사업 인허가 승인 시 납부비중이 52.6%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타 31.4%, 준공 시 16.1%의 순

9) 예로써 서울시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 일을 매년 7월 31일로 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서울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납부시기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10~'15 합계
사업 인허가 승인 시 비중	2,111.3 54.4	1,924.6 52.8	1,952.7 51.0	1,997.1 51.2	2,068.0 52.2	2,326.4 53.7	12,380.1 52.6
준공 시 비중	600.8 15.5	538.6 14.8	646.3 16.9	606.4 15.5	666.1 16.8	728.8 16.8	3,787.0 16.1
기타 비중	1,166.4 30.1	1,179.2 32.4	1,232.0 32.2	1,300.8 33.3	1,226.2 31.0	1,280.1 29.5	7,384.7 31.4
합계 비중	3,878.4 100.0	3,642.4 100.0	3,831.0 100.0	3,904.3 100.0	3,960.3 100.0	4,335.3 100.0	23,551.8 100.0

자료 : 기재부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년도 자료를 기초로 작성

### □ 성격별 비중은 수익자 부담금(50.4%), 이용자·원인자 부담금(38.0%) 등의 순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성격별로 수익자 부담금,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으로 구분 가능
  - 수익자 부담금은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이며,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임
  - 유도성 부담금은 생태계 보전 협력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과밀 부담금 등 환경개선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특정 정책목표와 연계된 부담금임

### 성격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단위: 십억 원, %)

구분	'10	'11	'12	'13	'14	'15	'10~'15 합계
수익자 부담금 비중	2,013.2 51.9	1,811.1 49.7	1,926.2 50.3	1,929.3 49.4	1,990.3 50.3	2,205.6 50.9	11,875.8 50.4
유도성 부담금 비중	462.7 11.9	470.1 12.9	390.3 10.2	433.7 11.1	451.3 11.4	515.9 11.9	2,724.1 11.6
이용자 원인자 부담금 비중	1,402.5 36.2	1,361.2 37.4	1,514.5 39.5	1,541.3 39.5	1,518.6 38.3	1,613.7 37.2	8,951.9 38.0
총합계 비중	3,878.4 100.0	3,642.4 100.0	3,831.0 100.0	3,904.3 100.0	3,960.3 100.0	4,335.3 100.0	23,551.8 100.0

자료 : 기재부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년도 자료를 기초로 작성



## 2.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현황

### □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한시유예 포함

-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16.5.18)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경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보전금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을 포함한 총 14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방안 발표<sup>10)</sup>

\* 낙후지역 지역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개발사업 촉진

-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16.6.15)에서 부담금 감면 개선과제 14개 중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6월까지 추진할 부담금 개선과제 8개 의결<sup>11)</sup>

###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으로 관련 부담금 1.4%p 감소 기대

- '16.6.15일 발표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등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한시 감면 예상액은 '17년 기준 598억 원

#### '16년 6월말까지 시행령 일괄 개정 추진 부담금 개선과제

부담금	순번	개선내용		개정법령 (개정시기)	소관부처	'17~'18 감면 (억 원)
		현행	개선			
농지보전 부담금	1	산업단지 조성 시 비수도권만 감면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 감면(2년)	농지법 시행령 ('16.6월)	농식품부	1,013
	2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른 부담금 감면 부재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른 낙후지역 설치시설에 대해 2년 한시 감면			105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3	준보전산지 산업단지 조성시 비수도권만 100% 감면	수도권 산업단지도 2년간 한시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16.6월)	산림청	30
	4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른 부담금 감면 부재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에 따른 낙후지역 설치시설에 대해 2년 한시 감면			18

10) 그동안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조치에도 대책 발표시점부터 정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이 투자 타이밍을 놓쳐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체감하기 힘든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인식아래,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 발표 시점부터 '2개월 내 정비 완료'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여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거나, 국민의 규제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한시유예' 카드를 동원

11) 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 부담금 한시감면, 지역 개발사업구역 농지보전 부담금 한시감면, 산업단지 조성 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한시 감면, 지역 개발사업구역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한시감면, '00년 이전 설치 입지시설의 재차 형질변경 시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면제 및 가설 건축물·임시시설 부담금 요율 축소,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공익목적 이용 시 물이용 부담금 감면규정 신설

부담금	순번	개선내용		개정법령 (개정시기)	소관 부처	'17~'18 감면 (억 원)
		현행	개선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5	'00년 이전 설치도로 등 입지 시설 형질 변경 시 부담금 부과 가설 건축물 및 임시시설도 일반시설과 동일 부담금 부과	부담금제도 시행이전 설치 도로 등 부담금 면제, 가설 건축물 및 임시시설 부담금 요율 축소 (130%→50%)	개발제한구역법 ('16.9월) 동시행령 ('16.6월)	국토부	11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6	본류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 미비	수질측정 등 공공기관 행정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발전사업자의 냉각수로 사용 등 공익적 목적 이용 시 부담금 면제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 시행령, 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 시행령,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 시행령('16.6월)	환경부	0
	7					3.0
	8					0
합계						1,180

-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으로 1.4%p의 전체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인하 기대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한시 감면에 따른 전체 관련 부담금 인하율 추산

(단위 : 억 원, %p)

구분	'17 예상 감면액	'17년 예상 부과액	'17 감면률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인하율 ('10~'15년 기준)
농지보전 부담금	563	11,240	5.0	1.26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24	1,208	2.0	0.05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11	999	1.1	0.04
합계	598	13,447	4.7	1.35

주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인하율은 '17년 감면률에 '10~'15년 기준 각 부담금이 전체 개발사업 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후 100으로 나눈 값

자료 : 기획재정부,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관련 한시·항구적 부담금 감면(안), '16.6.15

## 1. 부과목적

### <목적이 같은 조세 및 다른 부담금과 중복>

#### □ 개발 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은 양도 소득세 등과 중복됨

- 개발 부담금은 이종과세는 아니지만 양도 소득세와 부과목적이 같으며, 부과목적이 같은 조세가 존재함에도 개발이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조세가 아닌 부담금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됨
  - 양도 소득세 부과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의 한 항목인 자본지출액에 개발 부담금이 포함되므로 개발 부담금과 양도 소득세를 이종과세로 보기는 어려움(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 투기방지 등의 공익적 목표는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들과 합리적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 재정충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목이 변경되어 재산가액이 늘어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한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세와도 중복되며 토지 보유 시 납부하는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와도 중복성이 있음

#### □ 기반시설 확보목적으로 조세와도 중복성이 있는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중복적으로 부과
  - 유사목적의 중복적인 부담금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원칙<sup>12)</sup>에 반함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등 주택사업관련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충당 목적의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 시설세(구 공동시설세), 지방 교육세 등의 조세와도 중복됨

12)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과시기가 유사한 8개 부담금에 대한 통합징수 체계가 구축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부족
  -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등은 모두 기반시설 설치 유형의 부담금으로 볼 수 있음
  -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등은 보전유형 부담금에 해당

**<부과목적의 혼재와 부과목적과 맞지 않는 계수 적용>**

**□ 과밀 부담금의 경우 다른 정책목적이 혼재되어 있음**

- 과밀 부담금의 경우 부과목적이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수도권 내부 과밀해소의 두 가지로 혼재되어 징수한 부담금의 절반을 수도권 내부 과밀해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배정
- 시설물 입지에 따른 교통 유발계수 적용이 미흡함에 따라 교통 유발계수가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목적과 비부합
  -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이 동일한 경우 도시 규모별로만 유발계수를 차등 적용, 시설물의 위치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

시설물의 교통 유발계수(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발췌)

시설 대분류	세분류	도시 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업무	일반 업무시설	1.20	1.00	0.82	0.82
숙박	관광숙박시설 중 특 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일반숙박 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판매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5.46	4.48	2.67	2.67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시설 대분류	세분류	도시 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미만	30만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 30만 미만
창고 저장	창고, 하역장 시설	0.61	0.50	0.37	0.30
운수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5.56	4.34	3.92	2.76
	철도 역사	4.13	3.76	3.11	2.46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자동차 관련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1.18	1.04	1.04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관광 휴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2.68	2.14	1.71

- 도심과 부도심, 도시외곽 등 시설물의 입지와 관계없이 유발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과 목적인 교통 유발 억제와 부합하지 않음

## 2. 부과대상

###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

#### □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은 실현되지 않은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성격의 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함
  - \* 개발이익은 특정한 환경아래 현재 시점에서 본 미래의 예상이익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것은 아님
-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특정사업 이행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 책임이라는 부담금의 특성과 맞지 않음
  - 개발사업을 통해 상승한 지가가 부동산의 양도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현실화되었다면 개발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은 일반국민과 동질적 요소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
  - 반면, 개발이익 실현이전의 시점에서는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들이 일반 국민과 동질적 요소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가공이익에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음

-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의 개념인 개발이익은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실제 가치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가치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음

- 부담금 부과기준이 가공이득인 미 실현 이득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금 납부 후 실제 실현된 가치가 현재가치에 미달하는 원본잠식이 발생할 우려

### 3. 부과시점 및 방법

#### <부과 시기>

##### □ 사업초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택업체 부담 가중

-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sup>13)</sup>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부담금 납부로 주택업체의 부담이 큼
- 사업초기 부담금 납부는 계약해제 또는 동호수 변경 등 계약사항 변경 시 분양자료를 제출하여 부담금을 환급받았다가, 해당 세대가 분양되었을 때 다시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부담금납부 관련업무 증가요인으로 작용

##### □ 사업 승인일 기준의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로 사업초기 부담 과다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은 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되며 사업시행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함
- \* 납부기한 후에는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부담금이 사업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재건축<sup>14)</sup> 등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상당기간이 소요<sup>15)</sup>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큼
-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13)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 계약자 및 분양공급 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납부 고지서를 개발사업자에게 발부, 개발사업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14) 재건축의 경우 사업 승인 이후에도 이주, 철거기간이 상당히 길며,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기 어려움

15) '00년대 기준 서울시 주택 재개발사업은 사업 인가에서 착공까지 평균 2.6년(31.7개월) 소요

서울시 주택재개발 단계별 사업소요 기간

(단위 : 개월)

구분	구역 지정 ~ 추진위	추진위~ 조합설립	조합 설립~ 사업 인가	사업 인가~ 관리 처분	관리 처분~ 착공	착공~준공	계
'70~'80년대			16.6	32.3	32.7		
'90년대		32.2	17.4	19.8	7.3	38.1	114.9
'00년대	6.2	27.7	21.2	18.0	13.7	33.0	118.8
'10년대	16.8		21.0				
평균	11.5	20.0	19.1	23.3	41.6		115.5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재개발사업 지연요인 및 개선방안, '15,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에 기초하여 분석)

<부과방법>

□ 토지매입 관련 부담금 등 제비용을 개발이익 산정 시 비용으로 불인정

-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차감한 값에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차감하여 산정함

개발 부담금 산정(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8조 및 제10조)

개발 부담금 = (개발이익(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부담률

- \* 종료시점 지가 :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
- \* 개시시점 지가 :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
- \* 부담률은 '14.7.15일부터 택지 개발사업 등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부담률 20%, 비계획 입지 개발사업은 25%

- 개발이익 계산 시 차감항목인 개시시점 지가에 토지 매입을 위한 부담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부담금이 실제보다 과다 산정되는 경향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율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부담 가중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율이 사회구조 변화 추세와 맞지 않게 '09년 법 개정을 통해 이전의 2배로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부담 가중
- \*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징수(부과율 : 공동주택 분양가의 0.8%, 단독주택 용지 분양가의 1.4%)
-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부담금 부과율을 오히려 인상한 것은 사회구조 변화 추세와 맞지 않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

(단위 : 가입여자 1명당 명)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합계출산율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자료: 통계청

- 학교용지 부담금은 '15년 기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의 10.5%, 전체 부담금의 2.4%를 차지, 분양가 상승 및 입주자 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

##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추이

(단위 : 십억 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0~'15
학교용지 부담금(A)	227.6	214.8	267.5	248.8	359.3	457.4	1,775.3
A/B X 100	5.9	5.9	7.0	6.4	9.1	10.5	7.5
A/C X 100	1.6	1.5	1.7	1.5	2.1	2.4	1.8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B)	3878.4	3,642.4	3,831.0	3,904.3	3,960.3	4,335.3	23,551.8
부담금 총액(C)	14,459.1	14,810.1	15,669.0	16,393.4	17,179.7	1,718.0	97,618.3

자료: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년도

- 학교용지 부담금은 행정 편의적 부과와 부과권자 재량에 따른 처분 등의 문제도 있음
  - 정부가 조세를 통해 '교육'이라는 공공재 인프라의 재원을 확보하는 대신 부담금을 통해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
  - 학교 신·증설 수요를 유발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재량으로 부과하는 문제<sup>16)</sup>

### □ 감면·면제·이의 신청 등 관련제도 미비

- 도시개발 구역 밖의 도시 기반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 부담금의 경우 감면 및 면제조항, 원인자 부담금(도로법상)의 경우 사후 이의 신청 제도, 분할납부제 등이 부재함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부담금은 법률이 아닌 열공급 규정을 통해 가산금에 대해 규정

### □ 가산금 요율이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상한보다 높은 부담금이 존재

-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15.12)으로 가산금과 증가산금 부과율 상한이 설정되었으나('16.12.30 시행) 학교용지 부담금 등의 경우 아직도 부담금 가산요율이 국세·지방세(3%)보다 높은 경우가 있음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어길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은 부과목적의 중요도와 납부의무 위반사유 등을 종합 고려한 적정수준이 되도록 규정(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3)
  -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가산금 상한선은 가산금 3%, 증가산금<sup>17)</sup> 0.12%

16)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수요가 없는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부과권자의 재량에 따른 부과처분 가능

17)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에 가산하는 가산금



- 체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금(증가산금)의 최대 징수기간이 부재하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의 부담 가중

**□ 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제한으로 수용·사용방식 사업의 자금부담 가중**

-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사업을 할 경우 분할납부 대상이 되지 못해 산업 단지 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 및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 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열거(농지법 제38조 제2항)
  - 개발 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 다른 부담금의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여 형평상의 문제 발생
-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지방식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토지 보상비에 대한 과중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수용·사용방식(혼용방식 포함)에 대해서는 일괄 납부토록 하고 있어 자금부담 가중

#### 4. 투명성

**□ 부담금 귀속과 사용용도의 투명성 부족**

- 개발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경우,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귀속되고, 나머지 개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정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됨

개발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배분항목		배분비율(%)	'15년 징수금액 (십억 원)	관련 법조항
중앙정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50.0	88.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4조 제1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및 제34조
기초 지자체	일반회계	50.0	85.0	
합계		100.0	173.0	

자료 : 기획재정부(201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16.5)

- \* 개발 부담금의 경우 '98년 위헌판결<sup>18)</sup> 이후 '99년 말까지 부과를 면제하다 '00년 인하된 부담률로 재부과<sup>19)</sup>하는 등 정부정책에 따라 변화되어 예측가능성이 낮음

18) 부과개시 시점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위헌 판결

19) 경제위기로 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을 면제함

### 개발 부담금 제도 변천 현황

연도	주요내용
1990.1. 1	부담률 50%
1998.6.25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95헌바 35)
1998.9.19 ~ 1999.12.31	개발 부담금 부과면제
2000.1. 1	재부과 및 부담률 인하(50→25%)
2002.1. 1	수도권 이외의 지역 부과 중지
2004.1. 1	수도권 지역 부과 중지
2006.1. 1	전국 재부과, 부담률 25%
2014.1.14	부담률 차등(계획입지 20%, 비계획입지 25%), 1년간 수도권 100% 면제, 수도권 이외 50% 감경
2015.8.11	'15.7.15~'18.6.30일까지 인가등 받은 계획입지 개발 사업은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

자료: 대한건설협회

-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경우 수산발전 기금으로 귀속되어 사용되므로 수산물 가격안정, 어업 경영자금 지원 등 해양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이라는 부담금 부과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될 개연성

####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부과목적과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현황

부과목적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훼손된 면적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함으로써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수산발전 기금에 100% 귀속)

### 수산발전 기금 현황

(단위 : 억 원)

수입			지출		
항목	'14실적	'15실적	항목	'14실적	'15실적
합계	7,503	7,880	합계	7,503	7,880
○ 자체수입	5,708	5,335	○ 사업비	5,059	4,835
- 부담금	235	220	- 해양 환경보전	119	133
해양 환경개선 부담금	22	19	- 수산물 가격안정	2,667	2,537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61	54	-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	-
수산물 공매 납입금	151	146	-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67	56

수입			지출		
항목	'14실적	'15실적	항목	'14실적	'15실적
해양심층수 이용 부담금	1	1	- 어업경영자금 지원	702	717
- 부담금 외	5,473	5,115	- 품목별 경쟁력 강화	8	-
○ 정부내부수입	510	170	- 직접 피해보전	11	13
정부 출연금	-	-	- 유통·가공시설 지원	236	210
공자기금 예수금	510	170	- 수산물 유통개선	1,249	1,169
○ 여유자금 회수	1,285	2,375	○ 기금 관리비	5	4
			○ 사업 운영비	8	8
			○ 공적자금 운영비	56	67
			○ 여유자금 운용	2,375	2,966

자료 : 기획재정부(201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16.5)

## 1. 개선방안

### 1) 부과목적이 같은 조세로의 전환과 유사목적 부담금의 통합

#### □ 조세와 중복되는 부담금의 폐지 추진

- 개발 부담금은 양도 소득세와 부과목적이 동일하며, 개발이익 현실화 이전 시점에 부과되는 경우 부담금 납부자가 일반 납세자에 비해 부담금 부과목적과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폐지
-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교육재정 충당목적의 지방 교육세와 중복<sup>20)</sup>되므로 폐지

#### □ 중복·유사목적의 부담금을 통합하고 장기적 부담률 인하 추진

- 중복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들을 통합
  -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부담금을 가칭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통합
  - 개발로 인한 농지, 초지 및 산지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은 가칭 보전 부담금으로 통폐합
- 통합된 부담금의 부과규모와 배분은 1차적으로는 기존 규모와 기존 용처 또는 부처비중에 따르되, 통합된 시스템이 안정된 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부담금 부과 수준의 인하 추진

#### □ 부과목적의 명확화·단순화와 부과목적에 부합한 부과기준 설정

- 과밀 부담금 중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목적의 광특회계 배정분은 수도권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폐지한 후, 세수 확대를 통해 일반회계로 흡수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목적의 부담금 부과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통합
- 기존 도시 규모별로만 차등을 두던 교통유발 부담금 유발계수를 도심과 부도심, 도시 외곽 등 시설의 입지에 따라서도 차등하여 적용

20) 학교용지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에 부과되며,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라 택지취득, 준공 및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및 보유 단계에서 지방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과목적이 유사한 학교용지 부담금과 지방 교육세는 중복적

## 2) 부과대상 개선 :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폐지

### □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등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

-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부담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발 부담금을 폐지
  -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여 개발 부담금과의 중복성이 강하고 임대주택 공급규정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되고 있으므로<sup>21)</sup> 폐지
-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 평가단이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고('13.12.9), 재건축 부담금 완화 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음

## 3) 부과시기 및 방법 개선

### □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 또는 면제확대 및 부과율 인하 등 추진

- 출산율·학생수 감소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배치되고 행정 편의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적극 검토
  - 폐지가 어려울 경우 학교 신설수요 없는 지역에서의 면제를 명확화하고 부과율 인하 등을 추진
    -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수요가 없는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 부담금 임의면제를 필수면제로 변경
    - 출산율과 학생 수 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와 맞지 않게 인상된 부과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단독주택 1.4% → 0.7%, 공동주택 0.8% → 0.4%)
- \* 학교용지 부담금은 ‘09년 부과율을 이전의 2배로 인상<sup>22)</sup>한 후 ’15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중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비중의 1.8배까지 급상승

### □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등의 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시기를 분양공급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입주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 :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2)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율 인상 논리로 “학교설립 수요 증가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힘(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09.4.30)

-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납부시기를 사업 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서 착공허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

#### □ 산정기준 개선과 감면·면제·사후 이의 신청 등 관련제도 정비

- 개발 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지가에 실제 토지매입 시 소요되는 부담금 등 각종 제비용을 포함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부담금의 가산금 관련 규정을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
- 도시개발 구역 밖의 도시 기반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 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원인자 부담금(도로법상)에 대해 사후 이의 신청제도와 분할 납부제도 도입

####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상응한 개별 부담금 가산금(증가산금) 조항의 조정

- 개별 부담금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 요율을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15.2.29일 개정, '16.12.30일 시행)의 가산금 및 증가산금 상한에 맞추어 조정
  - \* 가산금 부과율 상한 3%, 증가산금 부과율 상한 0.12%
- 학교용지 부담금(5%) 등 현행 가산금 요율이 국세·지방세 가산금(3%)보다 높은 부담금의 가산금(증가산금) 요율을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상한 이하로 조정하여 납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

#### □ 증가산금의 최대 징수기간 명시 및 농지보전 부담금 분납대상 확대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부담금 증가산금 최대 징수기간을 국세·지방세에 상응<sup>23)</sup> 하도록 명시하고 개별 부담금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체납자의 부담완화 도모
- 농지보전 부담금 분할납부 대상을 모든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확대

### 4) 투명성 제고

#### □ 부담금 귀속과 사용의 투명성 제고

- 지자체가 개발 부담금의 지방정부 귀속분을 가칭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유도하여 개발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사용투명성을 제고
  - \*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이라는 부담금 부과목적과 부합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징수분을 수산 발전 기금 내에서 계정분리하여 관리

23) 국세 및 지방세 증가산금의 최대 징수기간은 60개월(국세징수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별 개선방안

부담금명	부과목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가공 이득인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므로 폐지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재원 확보	중복성이 있으므로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통합
원인자 부담금	도로공사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사후 이의 신청 제도와 분할납부 제도가 부재하므로 관련 제도 법제화
도시개발 구역 밖의 도시개발 시설 및 추가 설치 비용 부담금	도시기반시설 추가비용 확보	미비된 감면 및 면제조항 법제화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량 감축 및 대중교통 재원 확보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이 동일한 경우 도시 규모별로만 유발 계수를 차등하고 있으므로 도심과 부도심 도시외곽 등 시설물 입지에 따른 교통 유발계수 차등화
과밀 부담금	수도권 과밀억제, 도시개발사업 재원 확보	두 가지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분리조정 인구집중 억제목적의 광특회계 배정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 과밀 (혼잡비용) 해소 부분은 교통유발 부담금 등으로 통합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사업의 개발 이익 환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므로 폐지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양도 소득세로 환수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 제한구역 관리 재원 확보	항만시설 공항시설 등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 항만, 공항 등 설치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기반시설 설치와 용지 확보	유사중복 부담금 존재.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통합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확보재원 마련	부담금 정당성 요건 충족이 어려우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할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폐지가 어려울 경우 종전 기준으로 부과율 환원
원인자 부담금(수도법)	수도사업 재원 확보	기반시설 부담금 등과 중복성.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통합
원인자 부담금(하수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재원 확보	기반시설 부담금 등과 중복성.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통합
생태계 보전 협력금	자연환경 보전 재원 마련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과 중복성. 보전 부담금으로 통합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재원확보	조세와의 중복성.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편입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보전 조성 관리기금 마련	분할납부 대상 제한 및 개발구역 보전 부담금 등과의 중복성. 모든 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 및 보전 부담금으로 통합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 조성, 축산 발전 기금 마련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과의 중복성. 보전 부담금으로 통합
집단에너지공급 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	열공급규정에서 가산금을 규정 법률로 가산금 규정 명문화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해양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수산발전 기금에 귀속되어 부과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개연성. 보전목적 부담금들과 중복. 사용용도를 해양 생태계 보전 및 복원으로 한정하고 보전 부담금으로 통합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정충당	다른 보전 목적 부담금과의 중복성. 보전 부담금으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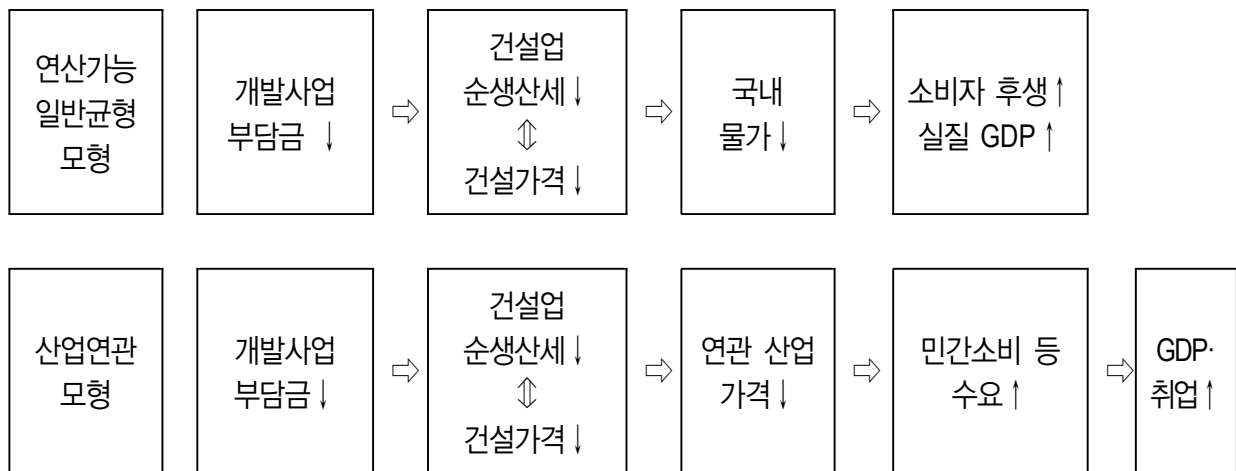
## 2. 기대효과

### 1) 기대효과 추정방법

#### □ 연산가능 일반균형(CGЕ) 모형과 산업연관(IO) 모형에 기초하여 기대효과 추정

- 한시적 규제유예에 따른 부담금 개선, 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각각 시나리오 1과 2로 하고,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1과 2를 포괄하도록 한 후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과 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해 기대효과 추정

#### 개발사업 부담금 인하에 따른 경제효과 파급 경로



- \*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Е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정책 및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 모형의 하나
- \* 산업연관모형(IO : Input-Output 모형)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 나라 전체 혹은 일정 지역의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건설업 순생산세율 수준을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CGE 모형과 IO 모형에 의해 효과 추정
- \* 순생산세율은 순생산세를, 순생산세를 제외한 총산출로 나눈 값
- \* 순생산세는 생산세에서 생산과 관련한 보조금을 제외한 순개념의 생산세<sup>24)</sup>

24) 생산세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생산자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기타생산물세, 생산에 사용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의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 생산세로 구성됨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 시나리오별 건설업 순간접세율

(단위: 십억 원, %)

구분	Base	S1	S2	S3
시나리오 내용	-	'16년 상반기 확정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한시적 유예 (농지보전 부담금 등)	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1 + S2
'10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인하율(%) <small>* '10~'15년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small>	0.00	1.35	14.83	16.19
'10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3,878.4	3,825.9	3,303.1	3,250.7
'10 건설업 순생산세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소 감안)	15,671.3	15,618.8	15,096.0	15,043.5
'10 순생산세 제외 건설업 총산출	179,218.3	179,270.8	179,793.6	179,846.1
건설업 순간접세율	8.74	8.71	8.40	8.36
건설업 순간접세 인하율(%)	0.0	0.36	3.98	4.34

주 : 1. '10년 자료를 이용한 것은 연장표가 아니라 실측에 기초한 '10년 기준 산업연관 실측표를 이용하기 위함  
 2. CGE 모형의 사회회계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은 '09년 산업연관표에 기초하고 있으나 '10년 이전의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통계를 얻기 어려움에 따라 '10년 기준으로 건설업 순간접세 인하율을 계산함. 금액기준으로 모형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접세 인하율에 기초하여 충격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약이 큰 편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 CGE 모형은 Base 모형에 시나리오별 순생산세율 인하충격을 준 후 효과 추정

- 시나리오별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에 따른 순간접세율의 수준을 계산한 후, 그 계산결과를 모형에 투입함
  - \* 분석에 이용한 CGE 모형은 특허청과 지식재산권연구원의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CGE를 이용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파급효과('13.12)에 제시된 28개 산업기반 CGE 모형을 5개 산업기반 CGE 모형으로 축소한 모형
- 시나리오별 순간접세 변화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결과를 충격이 주어지기 전의 Base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기대효과 추정
  - \* Base 결과란 순간접세율 변화충격이 가해지기 전의 결과를 의미함

### □ IO 모형은 물가파급 모형과 소비의 가격탄력성 관련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추정

- 인하된 건설업 순간접세율 수준에 상응하는 건설업 가격하락률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물가 파급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가격하락률을 추정
  - \* 시나리오별 건설업 가격하락률은 건설업 순간접세율과 건설업 가격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sup>25)</sup>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 시나리오별 건설업 가격하락률 계산결과

(단위 : %)

구분	Base	S1	S2	S3
순간접세 감안 전 건설업 가격	1	1	1	1
건설업 순간접세율	8.74	8.71	8.40	8.37
순간접세 감안 후 건설업 가격	1.0874	1.0871	1.0840	1.0836
Base 대비 순간접세 감안 후 건설업 가격 하락률(-)	0.000	0.364	3.980	4.341

- 산업별 가격하락률에 기존 선행연구가 제시한 산업별 민간소비의 가격 탄력성<sup>26)</sup>과 민간소비를 곱하여 부가가치 창출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액 증가액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건설업 부담금 감축에 따른 산업별 가격 하락률에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의 척도인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민간수요를 곱하여 추정
  - 총산출 증가효과는 부가가치 창출액에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추정하였고, 총산출 증가효과에 산업별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를 곱하여 산업별 취업 및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
- \*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고용 효과와 간접고용 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고용 효과는 부가가치 창출 분 산출을 위한 직접적인 취업 및 고용증가 분을, 간접효과는 부가가치 창출액이 산업 연관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한 취업 및 고용증가 분을 각각 나타냄

## 2) 기대효과 추정결과

### <CGE 모형의 주요 결과>

#### □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고 명목 GDP는 감소하나, 실질 GDP는 소폭 증가

- 건설업 순생산세율 인하로 인한 가격하락이 소비자 후생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대등변이와 보상변이<sup>27)</sup>에 의해 측정한 결과, 소비자 후생은 시나리오별로

25) CGE 모형을 통해 추정된 산업별 가격 하락률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CGE 모형이 기초하고 있는 산업부문이 5개 부문(1차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지식 서비스 제외), 지식서비스업)에 그침에 따라 대분류기준 전체산업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업 순간접세율과 건설업 가격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건설업 가격 하락률을 계산하고, 건설업부문을 외생화한 후 산업연관모형 물가파급효과 모형에 의해 다른 산업의 가격하락률을 추정함. CGE 모형의 산업부문이 5개 부문에 그친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AMS Version을 이용했기 때문

26) 민간소비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소비가 몇 % 감소하는지를 나타냄.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1% 하락할 때 민간소비가 몇 % 증가하는 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됨

27) 소비자 후생변화는 일반수요 곡선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소비자 잉여변화, 보상수요 곡선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대등변이 및 보상변이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음. 가격하락 시 후생변화의 크기는 개념상 대등변이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소비자 잉여변화, 이어서 보상변이의 순서를 따름. 아래 그림에서 q(p)는 일반수요 곡선, q(U0,p)와 q(U1,p)는 각각 가격변화 전 효용수준하의 보상수요 곡선과 변화 후 효용수준하의 보상수요 곡선임. 그림에서 세 가지 개념을 면적으로 표시하면 소비자 잉여 변화는 v+w, 대등변이는 v+w+z, 보상변이는 v가 됨. 개념상 대등변이는 변화 전 가격 수준 아래에서 가격변화 후의 효용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변화 후 소비자의 부(Wealth)에 더해주어야 하는 금액의

71억 원에서 751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순간접세 감축에 따른 수출 등 물량수요 증가에 힘입어 Base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실질 GDP는 소폭이지만 증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별 후생지표 및 GDP 변화효과

(단위 : 십억 원, %)

구분		S1	S2	S3
소비자 후생 증가 (십억 원)	대등변이 (EV : Equivalent Variation)	7.146	69.620	75.127
	보상변이 (CV : Compensating Variation)	7.146	69.615	75.122
실질 GDP(증가율, %)		0.00091	0.0088	0.0095

주 : 1. Base 대비 각 시나리오별 지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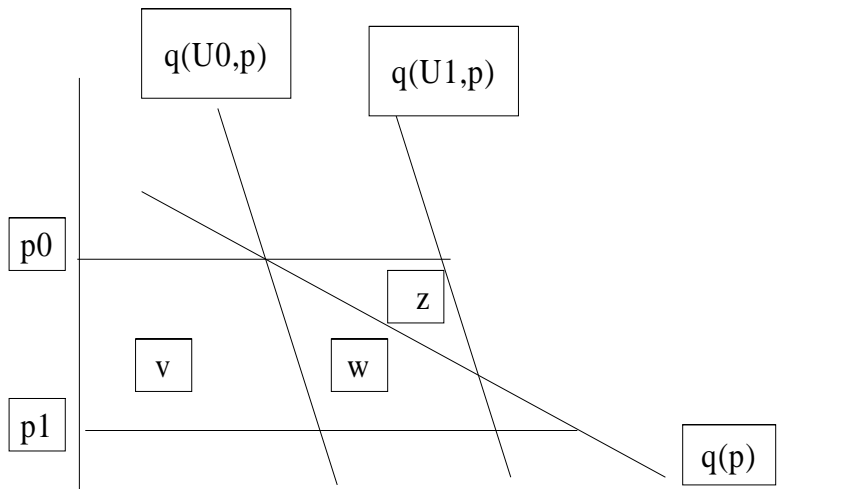
- 2. S1은 시나리오 1(16년 상반기 확정 농지보전 부담금 등 한시적 부담금 유예), S2는 시나리오 2(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3는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 1과 2를 포괄

<10 모형의 주요 결과>

□ 부가가치 및 산출액 증가효과는 시나리오 3 기준으로 2.5천억 원, 4.3천억 원

- 민간소비에 산업별 물가하락률 및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 기대 증가액 합계는 S1이 0.2천억 원, S2가 0.3천억 원, S3가 2.5천억 원으로 각각 나타남
-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액에 생산유발계수를 곱한 산출 증가액 합계는 S1이 0.4천억 원, S2가 3.9천억 원, S3가 4.3천억 원

크기를 의미함. 즉, 가격과 부를  $P$ 와  $w$ , 효용을  $U$ 라 하고 가격과 효용의 함수인 최소지출 함수를  $E(P, U)$ 라 하면,  $w(=E(P1, U1)) + \text{대등변이}(EV) = E(P0, U1)$ 이 됨. 보상변이는 변화된 가격수준 아래에서 소비자의 효용을 변화 전 효용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소비자의 변화 전 부(wealth)에서 공제해 주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함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별 기대효과(IO모형 이용 결과)

(단위 : 10억 원)

구분	가계소비(부가가치)			산출		
	S1	S2	S3	S1	S2	S3
농림수산	0.7	7.3	8.0	1.2	13.5	14.7
제조	3.5	38.2	41.6	6.3	68.9	75.1
전력·가스·증기	0.6	6.8	7.4	0.9	9.9	10.8
수도·폐기물·재활용	0.1	0.6	0.7	0.1	1.2	1.3
서비스	16.0	174.6	190.4	27.2	297.5	324.5
전산업	20.8	227.4	248.1	35.8	390.9	426.4

주 : 광업과 건설업의 경우, 산업연관표상 최종수요 항목상의 민간소비가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음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 취업 창출효과는 S3 기준 4.5천 명 수준

- 산출 증가액에 취업계수를 곱하여 추산한 취업 창출효과는 S1 0.4천 명, S2 4.1천 명, S3 4.5천 명으로 각각 나타남
- 부가가치 증가액 산출을 위한 직접적 취업 창출효과가 부가가치 증가액이 산업 간 연관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산을 유발하는 간접적 취업 창출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sup>28)</sup>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별 기대효과(취업창출, IO모형 이용)

구분	취업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수산	35.2	384.7	419.7	19.0	208.1	227.1	16.1	176.6	192.6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	13.1	143.4	156.5	6.4	69.9	76.2	6.7	73.6	80.3
전력·가스·증기	0.8	8.8	9.6	0.6	6.1	6.6	0.3	2.8	3.0
수도·폐기물·재활용	0.7	7.9	8.6	0.4	3.9	4.2	0.4	4.0	4.4
건설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	326.6	3,571.3	3,895.8	185.9	2,032.6	2,217.3	140.7	1,538.7	1,678.5
전산업	376.5	4,116.1	4,490.2	212.2	2,320.5	2,531.4	164.2	1,795.6	1,958.8

28) 총 취업 창출 = 산출 증가 x 취업계수, 직접 취업창출 = 부가가치 증가 x 취업계수, 간접적 취업창출 = 총 취업창출 - 직접적 취업창출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는 S3 기준으로 2.5천 명

- 산출 증가액에 고용계수를 곱하여 추산한 고용 창출효과는 S1 0.2천 명, S2 2.3천 명, S3 2.5천 명으로 각각 나타남
- 고용창출 또한 취업창출과 같이 직접적 효과가 간접적 효과보다 큼

산업부문별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별 기대효과(고용창출)

구분	고용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수산	2.9	31.3	34.2	1.6	17.0	18.5	1.3	14.4	15.7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	10.7	117.4	128.1	5.3	57.4	62.7	5.5	60.0	65.4
전력·가스·증기	0.8	8.7	9.5	0.5	6.0	6.5	0.2	2.7	3.0
수도·폐기물·재활용	0.5	5.3	5.8	0.2	2.6	2.9	0.2	2.7	2.9
건설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	192.2	2,101.5	2,292.5	110.0	1,202.7	1,312.0	82.2	898.8	980.5
전산업	207.1	2,264.3	2,470.0	117.6	1,285.7	1,402.5	89.5	978.6	1,067.5

3) 시사점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은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로 연결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 ⇒ 건설업 가격하락 ⇒ 산업연관 효과에 의한 전반적인 가격수준 하락 ⇒ 소비자 후생증대』 로 연결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가의 가치는 감축 시나리오 별로 적게는 71억 원에서 7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별 소비자 후생증가 효과

(단위 : 십억 원)

구분	S1	S2	S3
대등변이(EV : Equivalent Variation)	7.146	69.620	75.127
보상변이(CV : Compensating Variation)	7.146	69.615	75.122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은 가격효과를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에 따른 가격효과를 민간소비에 기초하여 추산한 결과, 감축 시나리오별로 0.2천억 원~2.5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이에 따른 0.4천 명~4.5천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개발관련 부담금 감축에 따른 가격하락은 소비는 물론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최종수요 증가를 촉진하므로 개발관련 부담금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는 부담금 감축을 위한 기회비용인 정부수입 감소분을 큰 폭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소비에 기초하여 추정된 부가가치 증가규모는 부담금 감축을 위한 정부수입 감소규모를 하회함
  - 그러나 가격하락에 따른 파급효과는 민간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투자, 수출 등 전반적인 최종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 정부소비와 민·관 고정투자, 수출의 수요 가격탄력성이 소비의 가격탄력성과 같다고 가정하고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기대효과가 기회비용의 6~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sup>29)</sup>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개선 시 부가가치 증가효과와 재정수입 감소액 비교**

(단위 : 10억 원, 배율)

구분	S1	S2	S3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소액(A) (= 정부수입 감소액)	51.8	501.0	540.3
민간소비에 기초한 부가가치 증가액(B)	20.80	227.40	248.06
B/A	0.4	0.5	0.5
총수요(정부수입 감소분 차감)에 기초한 부가가치 증가액(C)	331.0	3,617.8	3,946.4
C/A	6.4	7.2	7.3

29) 민간소비가 최종수요의 33.2% 수준임에도 최종수요에 기초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민간소비에 기초한 부가가치 창출효과 10배 이상으로 추정된 것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축으로 인한 가격하락 효과가 매우 큰 건설업이 민간소비는 전혀 없는 반면, 최종수요에 포함되는 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액은 183.5조 원에 달하기 때문

## <부 록> 1.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현황

근거·목적·대상 및 산정기준

관련 부처	부담금명	근거규정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국토 교통부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 제3조	개발이익 환수	택지 개발사업 등	개발이익의 25%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대도시권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광역 교통시설 자원 확보	택지 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수도권)	택지조성(1㎡당 표준 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 공제액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 제91조	도로공사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타 공사자 또는 행위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도시개발 구역 밖의 도시개발 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 부담금	도시개발법 제58조	도시기반시설 추가비용 확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세부기준에 따름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교통량 감축 및 대중교통 자원 확보	10만 이상 도시의 바닥 면적 1천㎡ 이상 건물 소유자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 유발계수
	과밀 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내지 제7조	수도권 과밀억제, 도시개발사업 자원 확보	연면적 2만5천㎡ 이상 복합건축물 등	표준건축비의 5~10%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제3조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도정법상의 재건축주택	초과이익의 0~50%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 제한구역 관리자원 확보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 행위	형질변경 허가면적과 건축물 건축허가 면적 × 지가차액 × 부과율 해제 대상지역 개발 사업자 중 복구계획 미제시 또는 비복구자: ㎡당 개발공시지가 평균치의 15%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68조	신·증축으로 유발 되는 기반시설 설치와 용지 확보	2백㎡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200) × 부담률(20%)
교육부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자원 마련	100세대 이상 주택 대지조성 택지 개발사업	공동주택(분양가의 0.8%) 단독주택(분양가의 1.4%)

관련 부처	부담금명	근거규정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환경부	원인자 부담금	수도법 제71조	수도사업자 재원 확보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 제공자	지자체 조례로 정함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재원 확보	공공하수도 공사를 유발하는 공사	지자체 조례로 정함
	생태계 보전 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보전 재원	환경 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선 재원 확보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 소유자 * '15.7.1일 이전에는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에게도 부과	연료(용수) 사용량 × 단위당 부과금액 × 연료 (오염유발)계수 × 지역 계수
농림 축산 식품부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 조성, 관리를 위한 기금 마련	농지의 전용행위	전용농지㎡ × 개별공시지가의 30%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 제23조	초지의 안정적 조성, 축산발전 기금 마련	초지의 전용행위	전용면적 × 납입단가
산업 통상 자원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지역난방 공사비 부담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당 14,040원 ~ 7,050원
해양 수산부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 및관리에관한법 제49조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보전 및 복원	해양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 생물 다양성 감소 초래 개발 사업자	훼손면적(㎡) × 단위 면적당 부과금액 (250원/㎡) × 지역계수 (항만구역 2, 그 외 4)
산림청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산지관리법 제19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정충당	산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	산지 전용면적 × 고시단가



연도별 징수동향

연번	부담금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합계
1	농지보전 부담금	1,042.3	948.5	894.0	935.8	985.3	1,100.0	5,905.9
2	대체초지 조성비	0.9	0.7	1.6	1.2	0.2	0.2	4.8
3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2.9	133.2	251.3	252.1	232.1	325.9	1,267.5
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70.4	557.1	588.3	600.5	597.4	582.8	3,596.6
5	생태계 보전 협력금	101.9	61.5	53.9	49.9	53.5	59.8	380.5
6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101.6	113.3	58.6	66.7	91.5	133.2	565.0
7	재건축 부담금	0.0	0.0	0.0	0.0	0.1	0.0	0.1
8	개발 부담금	294.7	211.9	299.2	242.6	206.2	173.0	1,427.5
9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국토 계획법상)	0.0	0.0	0.0	0.2	1.0	2.0	3.2
10	과밀 부담금	78.4	111.9	79.6	114.8	99.5	96.5	580.8
11	학교용지 부담금	227.6	214.8	267.5	248.8	359.3	457.4	1,775.3
12	교통유발 부담금	174.2	175.2	185.6	197.1	200.7	221.1	1,153.8
13	환경개선 부담금	648.3	662.7	672.3	684.0	684.9	692.0	4,044.2
14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121.4	159.5	185.1	237.3	147.1	105.6	955.9
1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 부담금	211.7	173.8	186.6	178.0	190.4	250.4	1,190.9
16	도시개발 구역 밖의 도시 기반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 부담금	10.8	8.1	2.4	4.5	3.1	10.9	39.8
17	원인자 부담금 (도로법상)	0.2	0.0	0.1	0.0	0.1	0.0	0.5
18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6.5	8.2	12.5	5.3	6.1	5.4	44.0
19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114.5	102.1	92.3	85.6	101.8	119.0	615.2
	합계	3,878.4	3,642.4	3,831.0	3,904.3	3,960.3	4,335.3	23,551.8

자료: 기재부(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연도)

유형 분류

연번	부담금명	관할부처	납부시기	부담금성격
1	농지보전 부담금	농림축산 식품부	사업 인허가· 승인 시	수익자 부담금
2	대체초지 조성비			
3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경부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	생태계 보전 협력금			
6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국토교통부		준공 시
7	재건축 부담금			
8	개발 부담금			
9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국토계획법상)			
10	과밀 부담금			
11	학교용지 부담금	교육부	수익자 부담금	
12	교통유발 부담금	국토교통부	기타	유도성 부담금
13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부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14	개발 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국토교통부		수익자 부담금
1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 부담금	산업통상 자원부		
16	도시개발 구역 밖 도시기반 시설 및 추가 설치비용 부담금	국토교통부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17	원인자 부담금(도로법상)			
18	해양 생태계 보전 협력금	해양수산부	사업 인허가· 승인 시	유도성 부담금
19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 보증금	산림청		수익자 부담금

자료 : 기재부(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연도)

## <부 록> 2. 개발관련 부담금 개선의 기대효과(산업연관모형)

기대효과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

구분	산업별 물가 하락률			수요 가격 탄성치	민간소비 (십억 원)	부가 가치 유발 계수	생산 유발 계수	취업 계수	고용 계수
	S1 :	S2 :	S3 = S1+S2						
농림수산	0.000	-0.003	-0.003	-0.222	12,804.0	0.8	1.8	28.5	2.3
광업	0.000	-0.003	-0.004	-0.042	0.2	0.8	1.8	4.9	4.4
음식료	0.000	-0.002	-0.003	-0.031	43,398.0	0.7	2.2	3.9	2.7
섬유·가죽	0.000	-0.003	-0.003	-0.035	15,942.6	0.6	2.1	6.4	4.5
목재·종이·인쇄	-0.001	-0.008	-0.009	-0.035	594.5	0.6	2.1	4.8	3.4
석탄·석유	-0.002	-0.017	-0.019	-0.037	17,587.8	0.3	1.2	0.2	0.2
화학	-0.003	-0.030	-0.033	-0.037	4,633.7	0.5	2.0	1.8	1.6
비금속광물	-0.003	-0.032	-0.035	-0.037	224.4	0.6	2.0	2.6	2.2
1차금속	-0.006	-0.065	-0.071	-0.037	19.9	0.5	2.3	1.1	1.0
금속	-0.004	-0.039	-0.042	-0.037	493.1	0.7	2.3	3.0	2.4
기계·장비	-0.001	-0.014	-0.015	-0.037	863.3	0.7	2.3	3.3	2.9
전기·전자기기	-0.002	-0.026	-0.028	-0.037	13,878.5	0.6	2.0	1.7	1.6
정밀기기	0.000	-0.002	-0.002	-0.037	488.8	0.6	2.0	4.2	3.5
운송장비	0.000	-0.002	-0.003	-0.037	20,492.5	0.6	2.3	2.2	2.1
기타제조·임가공	-0.001	-0.007	-0.008	-0.036	2,322.0	0.8	2.0	9.1	5.7
전력·가스·증기	-0.001	-0.008	-0.009	-0.047	17,064.7	0.4	1.5	0.9	0.9
수도·폐기물 재활용	0.000	-0.003	-0.004	-0.047	3,836.9	0.8	2.0	6.5	4.4
건설	-0.029	-0.320	-0.349	-0.047	0.0	0.8	2.2	8.1	5.9
도소매	-0.002	-0.024	-0.026	-0.047	60,549.5	0.9	1.8	16.5	8.6
운송	-0.001	-0.013	-0.014	-0.047	19,231.3	0.6	1.7	9.4	4.9
음식·숙박	0.000	-0.004	-0.005	-0.047	45,995.6	0.8	2.0	18.7	8.9
정보통신·방송	-0.001	-0.008	-0.009	-0.047	25,308.3	0.8	1.8	6.0	5.5
금융·보험	-0.002	-0.017	-0.018	-0.047	49,235.7	0.9	1.7	5.7	5.5
부동산·임대	-0.001	-0.006	-0.006	-0.047	86,047.1	1.0	1.4	3.7	2.2
전문·과학·기술	-0.003	-0.027	-0.030	-0.047	1,730.2	0.8	1.7	11.6	10.2
사업지원	0.000	-0.004	-0.005	-0.047	3,016.1	0.9	1.6	24.1	22.7
공공행정·국방	0.000	0.000	0.000	-0.047	886.2	0.9	1.4	9.7	9.7
교육	0.000	0.000	0.000	-0.047	49,810.6	0.9	1.5	16.5	12.6
보건·사회복지	0.000	-0.002	-0.002	-0.047	32,322.7	0.8	1.8	13.2	12.3
문화·기타	0.000	-0.003	-0.003	-0.047	49,207.6	0.8	1.8	22.3	11.3

주 : S1은 시나리오 1('16년 상반기 확정 농지보전 부담금 등 한시적 부담금 유예), S2는 시나리오 2 (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3는 개발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 1과 2를 포괄

산업별 시나리오별 부가가치 및 산출 증가 효과

구분	민간소비 및 산출 증가(10억 원)						
	민간소비			산출			
	S1	S2	S3	S1	S2	S3	
농림수산	0.7	7.3	8.0	1.2	13.5	14.7	
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	소계	3.5	38.2	41.6	6.3	68.9	75.1
	음식료	0.3	3.1	3.4	0.6	6.8	7.4
	섬유·가죽	0.1	1.5	1.6	0.3	3.0	3.3
	목재·종이·인쇄	0.0	0.2	0.2	0.0	0.4	0.4
	석탄·석유	1.0	11.1	12.2	1.2	13.3	14.5
	화학	0.5	5.2	5.7	1.0	10.6	11.5
	비금속광물	0.0	0.3	0.3	0.0	0.5	0.6
	1차금속	0.0	0.0	0.1	0.0	0.1	0.1
	금속	0.1	0.7	0.8	0.2	1.7	1.8
	기계·장비	0.0	0.4	0.5	0.1	1.0	1.1
	전자·전자기기	1.2	13.2	14.4	2.4	26.2	28.5
	정밀기기	0.0	0.0	0.0	0.0	0.1	0.1
	운송장비	0.2	1.8	1.9	0.4	4.1	4.4
	기타제조·임가공	0.1	0.6	0.6	0.1	1.2	1.3
	전력·가스·증기	0.6	6.8	7.4	0.9	9.9	10.8
수도·폐기물·재활용	0.1	0.6	0.7	0.1	1.2	1.3	
건설	0.0	0.0	0.0	0.0	0.0	0.0	
서비스	소계	16.0	174.6	190.4	27.2	297.5	324.5
	도소매	6.3	68.7	74.9	11.1	120.9	131.9
	운송	1.1	12.0	13.1	1.8	19.8	21.6
	음식·숙박	0.9	9.5	10.4	1.8	19.3	21.0
	정보통신·방송	0.9	10.0	10.9	1.7	18.3	20.0
	금융·보험	3.5	38.2	41.7	5.9	64.6	70.5
	부동산·임대	2.1	23.0	25.1	2.9	31.4	34.3
	전문·과학·기술	0.2	2.2	2.4	0.3	3.8	4.1
	사업지원	0.1	0.6	0.7	0.1	0.9	1.0
	공공행정·국방	0.0	0.0	0.0	0.0	0.0	0.0
	교육	0.1	0.6	0.6	0.1	0.9	0.9
	보건·사회복지	0.2	2.5	2.7	0.4	4.4	4.8
	문화·기타	0.7	7.3	7.9	1.2	13.3	14.5
전산업	20.8	227.4	248.1	35.8	390.9	426.4	

주 : S1은 시나리오 1('16년 상반기 확정 농지보전 부담금 등 한시적 부담금 유예), S2는 시나리오 2 (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3는 개발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 1과 2를 포괄

산업별 시나리오별 취업창출 효과

구분	취업(명)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수산	35.2	384.7	419.7	19.0	208.1	227.1	16.1	176.6	192.6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	소계	13.1	143.4	156.5	6.4	69.9	76.2	6.7	73.6	80.3
	음식료	2.5	26.8	29.3	1.1	12.3	13.5	1.3	14.5	15.8
	섬유·가죽	1.8	19.3	21.1	0.9	9.3	10.2	0.9	10.0	10.9
	목재·종이·인쇄	0.2	1.8	1.9	0.1	0.8	0.9	0.1	0.9	1.0
	석탄·석유	0.2	2.4	2.6	0.2	2.0	2.2	0.0	0.4	0.4
	화학	1.8	19.4	21.1	0.9	9.5	10.4	0.9	9.9	10.8
	비금속광물	0.1	1.4	1.5	0.1	0.7	0.8	0.1	0.7	0.7
	1차금속	0.0	0.1	0.1	0.0	0.1	0.1	0.0	0.1	0.1
	금속	0.5	4.9	5.4	0.2	2.1	2.3	0.3	2.8	3.1
	기계·장비	0.3	3.4	3.7	0.1	1.5	1.6	0.2	1.9	2.1
	전기·전자기기	4.0	44.0	48.0	2.0	22.2	24.3	2.0	21.8	23.7
	정밀기기	0.0	0.3	0.4	0.0	0.2	0.2	0.0	0.2	0.2
	운송장비	0.8	8.9	9.7	0.4	3.9	4.2	0.5	5.0	5.5
	기타제조·임가공	1.0	10.7	11.6	0.5	5.2	5.7	0.5	5.4	5.9
	전력·가스·증기	0.8	8.8	9.6	0.6	6.1	6.6	0.3	2.8	3.0
수도·폐기물·재활용	0.7	7.9	8.6	0.4	3.9	4.2	0.4	4.0	4.4	
건설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	소계	326.6	3,571.3	3,895.8	185.9	2,032.6	2,217.3	140.7	1,538.7	1,678.5
	도소매	182.7	1,997.9	2,179.5	103.8	1,135.1	1,238.3	78.9	862.8	941.2
	운송	17.0	185.5	202.4	10.3	112.1	122.3	6.7	73.4	80.1
	음식·숙박	32.9	360.2	392.9	16.3	178.2	194.4	16.6	182.0	198.5
	정보통신·방송	10.1	110.5	120.5	5.5	60.2	65.7	4.6	50.3	54.9
	금융·보험	33.5	366.7	400.0	19.9	217.1	236.8	13.7	149.6	163.2
	부동산·임대	10.7	116.6	127.2	7.8	85.5	93.2	2.9	31.2	34.0
	전문·과학·기술	4.0	43.3	47.3	2.4	25.7	28.1	1.6	17.6	19.2
	사업지원	2.1	22.9	25.0	1.3	14.5	15.8	0.8	8.4	9.1
	공공행정·국방	0.0	0.1	0.1	0.0	0.0	0.0	0.0	0.0	0.0
	교육	1.3	14.2	15.5	0.9	9.7	10.6	0.4	4.5	4.9
	보건·사회복지	5.3	58.1	63.3	3.0	32.6	35.6	2.3	25.5	27.8
	문화·기타	27.0	295.4	322.2	14.8	161.8	176.5	12.2	133.6	145.7
전산업	376.5	4,116.1	4,490.2	212.2	2,320.5	2,531.4	164.2	1,795.6	1,958.8	

주 : S1은 시나리오 1(16년 상반기 확정 농지보전 부담금 등 한시적 부담금 유예), S2는 시나리오 2 (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3는 개발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 1과 2를 포괄

산업별·시나리오별 고용창출 효과

구분	고용(명)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S1	S2	S3	S1	S2	S3	S1	S2	S3	
농림수산	2.9	31.3	34.2	1.6	17.0	18.5	1.3	14.4	15.7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제조	소계	10.7	117.4	128.1	5.3	57.4	62.7	5.5	60.0	65.4
	음식료	1.7	18.4	20.1	0.8	8.5	9.2	0.9	9.9	10.8
	섬유·가죽	1.2	13.5	14.7	0.6	6.5	7.1	0.6	7.0	7.6
	목재·종이·인쇄	0.1	1.2	1.4	0.1	0.6	0.7	0.1	0.6	0.7
	석탄·석유	0.2	2.4	2.6	0.2	2.0	2.2	0.0	0.4	0.4
	화학	1.6	17.4	19.0	0.8	8.6	9.3	0.8	8.9	9.7
	비금속광물	0.1	1.2	1.3	0.1	0.6	0.6	0.1	0.6	0.6
	1차금속	0.0	0.1	0.1	0.0	0.0	0.1	0.0	0.1	0.1
	금속	0.4	4.0	4.4	0.2	1.7	1.9	0.2	2.3	2.5
	기계·장비	0.3	3.0	3.3	0.1	1.3	1.4	0.2	1.7	1.9
	전기·전자기기	3.7	40.7	44.4	1.9	20.6	22.4	1.8	20.1	21.9
	정밀기기	0.0	0.3	0.3	0.0	0.1	0.2	0.0	0.1	0.2
	운송장비	0.8	8.6	9.4	0.3	3.7	4.1	0.4	4.9	5.3
	기타제조·임가공	0.6	6.7	7.3	0.3	3.3	3.6	0.3	3.4	3.7
	전력·가스·증기	0.8	8.7	9.5	0.5	6.0	6.5	0.2	2.7	3.0
수도·폐기물·재활용	0.5	5.3	5.8	0.2	2.6	2.9	0.2	2.7	2.9	
건설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	소계	192.2	2,101.5	2,292.5	110.0	1,202.7	1,312.0	82.2	898.8	980.5
	도소매	94.8	1,036.9	1,131.1	53.9	589.1	642.6	41.0	447.8	488.5
	운송	8.9	96.9	105.7	5.4	58.6	63.9	3.5	38.3	41.8
	음식·숙박	15.7	171.3	186.9	7.8	84.8	92.5	7.9	86.6	94.4
	정보통신·방송	9.1	99.8	108.9	5.0	54.4	59.3	4.2	45.4	49.5
	금융·보험	32.2	352.1	384.1	19.1	208.5	227.4	13.1	143.6	156.7
	부동산·임대	6.3	69.4	75.7	4.7	50.9	55.5	1.7	18.5	20.2
	전문·과학·기술	3.5	38.2	41.7	2.1	22.7	24.7	1.4	15.5	16.9
	사업지원	2.0	21.6	23.5	1.3	13.7	14.9	0.7	7.9	8.6
	공공행정·국방	0.0	0.1	0.1	0.0	0.0	0.0	0.0	0.0	0.0
	교육	1.0	10.8	11.8	0.7	7.4	8.1	0.3	3.4	3.7
	보건·사회복지	4.9	54.1	59.0	2.8	30.4	33.1	2.2	23.7	25.9
	문화·기타	13.8	150.3	164.0	7.5	82.4	89.8	6.2	68.0	74.2
전산업	207.1	2,264.3	2,470.0	117.6	1,285.7	1,402.5	89.5	978.6	1,067.5	

주 : S1은 시나리오 1(16년 상반기 확정 농지보전 부담금 등 한시적 부담금 유예), S2는 시나리오 2 (개발 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S3는 개발관련 부담금 개선 시나리오 1과 2를 포괄

## 참고문헌

-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08.1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 '12.7.27  
국토교통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익 환수 개선방안 마련 연구, '14.12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법정 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정부담금 제도를  
중심으로, '08.11  
기획예산처, 부담금운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07.12  
기획재정부, 2015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16.5  
기획재정부, 2016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 '15.9  
김순용·박현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이용한 지역 및 소득계층별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15.6  
대한건설협회, 주택사업관련 부담금 현황, '16.4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산업 규제관련 핵심 법률  
개정과제, '14.8  
류태규 외,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 CGE를 이용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파급효과, '13.12  
신동천, 한국은행, 간접세 인하가 산업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 CGE 모형을  
이용한 의태분석,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경제분석 제7권 제2호, '01  
신영수, 현행 준조세 통제규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담금, 수수료, 기부금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7권 제1호, '13.3.22  
신종익, 한국경제연구원,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방안, '06.1.10  
안병철·이계만, 부담금 제도의 특성 연구: 행정부터 98개 부담금 내용분석, 한국  
거버넌스 학회보 20(1), '13.4  
임동순, 한국규제학회, 부담금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측정방법론을 중심으로,  
'0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06.3.10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년 부담금 개혁과제(정책건의), '11.7  
정동원·한종호, 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대구경북 발전연구원 저널, '13.4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14